

[사건명] 행심 2016 - 48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1. 청구인과 피해학생 □□□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2016. 9. 9. 청구인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 피해학생 등 같은 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였고, 청구인의 父방에서 4명의 학생이 전
쟁놀이를 하던 중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배를 때리고, 공구(펜치, 니
퍼 등)를 던져 피해학생은 2016. 9. 19.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
고, 그 전인 2016. 3. 2. 입학식 날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우연히 음
식점에서 만났는데,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음식점 놀이방에서 놀던 중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와 성기 일부가 노출
되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 성폭력에 해당된다며 2016. 9. 28. 학

교폭력으로 추가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6. 10. 2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6. 12.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1. 2016. 9. 9. 청구인의 집에서 생일잔치가 열려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였고, 청구인의 父 방에서 4명의 남자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나오는 놀이를 전쟁놀이로 따라하였고, 이후 피해학생은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청구인과 핸드폰 게임을 하며 놀았으며, 집에 돌아가서도 피해학생의 母가 감사하다는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전혀 폭력이라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황이 없다는 당일 참석한 학부모들의 확인서에서도 알 수 있다.
2. 2016. 9. 10. 피해학생은 반 친구 집에 놀러가 장롱에서 뛰어내리고 함께 놀던 친구를 때리는 등 전날 폭행을 당한 아이로 보이지 않았으나, 2016. 9. 11. 피해학생 母가 피해학생이 생일파티 날 청구인에게 맞아 배가 아프다 하여 청구인과 母는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였다.
3. 잘 지내던 아이가 사건발생 4일 만에 병원에 간 것과, 집에서 5분 거

리에 있는 나사렛국제병원을 두고, 타 지역에 있는 외과까지 찾아가 폭행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

4. 2016. 3. 2. 입학식 후 식당 놀이방에서 청구인이 7세 여아 ◆◆◆과 동막초 1학년 ▽▽▽에게 피해학생 양팔을 잡게 한 후 30여명 아이들 앞에서 피해학생 바지를 내려 성적 수치심을 줬다 신고하였는데, ▽▽▽은 이날 식당에 가지 않았고, 피해학생과 모르는 사이로, 가지도 않은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한 점을 볼 때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5. 피해학생 母는 여름방학 전에 청구인 母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여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함께 가자고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으로 힘들어했다면 청구인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6. 아이들이 놀다보면 서로 치고받을 수 있지만 학부모 성향에 따라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으므로, 생일파티 날 일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음에도 피해학생 측은 근거 없는 상해진단서로 치료비를 요구하였다.
7. 청구인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억울하였으나, 학폭위가 시작되면서 무수한 소문들로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서면사과로 마무리 하고 싶었으나, 계속되는 피해학생 측의 괴롭힘을 참을 수 없고, 폭행상해 및 성폭행에 대한 증거나 증인 없이 청구인에게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 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황이 없다는 학부모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학부모들은 거실에 있었고, 청구인 포함 4명의 학생들은 청구인의 父 방에서 놀이를 하고 있어, 실제로 놀이과정을 지켜보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같이 놀이를 하던 학생 4명 중 2명은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으나, 2명은 때리는 것을 보았다 진술하였다.
2. 생일잔치 후에 피해학생 母가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맞아 배가 아프다 전화하자 2016. 9. 11.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찾아가 아프게 한지 모르고 그랬다면 때렸음을 시인하며 사과하였고, 이후 청구인 母는 피해학생 母에게 2016. 9. 12, 2016. 9. 19 재차 사과하였다.
3. 2016. 3월 초 학부모 반모임에서도 피해학생과 다른 여러 학생을 식당 놀이터에서 때린 적이 있어 피해학생 母와 상담하고 청구인을 상담 지도하였다.
4. 2016. 3. 2. 입학식 후 식당 놀이터에서 놀이하던 중 바지를 벗긴 일에 대해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반되며,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긴 것에

대해 인정하였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장난, 사소한 괴롭힘, 무심코 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본 사안도 청구인은 실수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지만 피해학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안의 기본판단요소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조치 처분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등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 제출한 증거,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과 피해학생 □□□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들이고, 2016. 9. 9. 청구인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 피해학생 등 같은 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여 생일파티를 하면서 청구인의 父방에서 청구인, 피해학생 등 4명의 학생이 전쟁놀이를 하였는데, 전쟁놀이를 하면서 청구인, 피해학생 등 4명의 학생들이 서로 손과 발로 상대방을 치고, 때리고, 맞기도 하는 등 공격과 수비를 하며 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다.
- 2) 그리고 청구인이 전쟁놀이 중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배를 발로 때린 사실이 있고, 피해학생의 발밑에 공구(펜치, 니퍼 등)를 던진 사실 및 피해학생이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 3) 위 사건 이전인 2016. 3. 2. ◇◇◇◇초등학교 입학식 날 청구인과 피해학생, 그 어머니들이 우연히 음식점에서 만났고, 음식점 놀이방에서 청구인과 피해학생 등 아이들이 뛰어 놀던 중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실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쳐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청구인은 2016. 9. 9. 학교폭력에 대한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도 당일 생일파티에 참석하였던 학생들 일부가 청구 인이 피해학생을 때리는 장면이나 피해학생이 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에 대한 청취, 청구인도 피해학생을 때린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 전쟁놀이라는 놀이 자체가 치고, 때리는 행위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당일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2016. 9. 11. 피해학생이 생일파티 날 청구인으로부터 맞아 배가 아프다 하여 청구인과 그 母가 직접 찾아가 때렸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의 母는 같은 해 9. 12. 피해학생의 母에게 사과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6. 9. 9.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6. 3. 2. 음식점 놀이방에서 청구인과 피해학생 등 아이들이 놀면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긴 사실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서 허위사실을 들어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학폭위에서의 일부 인정하는 진술, 피해학생의 진술에서 볼 때, 당일 청구인이 일부러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겼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실수로 피해학생의 바지가 벗겨졌는지는 불분명하나, 청구인의 행위로 피해학생의 바지가 벗겨진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2016. 9. 9.과 같은 해 3. 2.의 각 학교폭력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중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이제 1학년 학생으로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학생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해가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전적으로 기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과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서면사과라는 경미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도 이미 피청구인에게 서면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교폭력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V.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